

자체종합감사 결과 및 조치 계획 보고

규제법무감사팀장(2012.4.2)

2012년도 자체감사계획에 따라 창덕궁관리소 등 3개 소속기관에 대해 실시한 감사 결과 및 조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.

I. 감사개요

- 기 간 : 2012. 2. 20(월) ~ 3. 23(금) (기간 중 14일간)
- 감 사 자 : 행정사무관 ○○○, 시설주사 ○○○, 행정주사 ○○○, 행정서기보 ○○○ 등 4명
- 대상기관 : 창덕궁관리소, 창경궁관리소, 칠백의총관리소 등 3개 소속기관
- 감사대상 : 前 자체감사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
- 감사중점 : 세입·세출예산집행, 공사 및 시설물 관리, 물품 및 유물관리, 국유재산 및 위탁관리 재산 등 적정성 여부

II. 감사결과

□ 감사결과 : 총 16건

- 처분내용 : 주의 3건, 기관주의 2건, 시정 9건, 모범사례 2건

※ 환수금액 : 5건 10,151,740원

- 행정상 조치 : 총 13건 (기관주의 2건, 시정 9건, 모범사례 2건)
 - 창덕궁관리소 : 5건 (기관주의 1건, 시정 3건, 모범사례 1건)
 - 창경궁관리소 : 4건 (기관주의 1건 시정 2건, 모범사례 1건)
 - 칠백의총관리소 : 4건 (시정 4건)

※ 모범사례에 대하여는 연말 자체감사 우수사례 심사 대상에 포함하고자 함

- 신분상 조치 : 총 3건 (주의 3건)
 - 창덕궁관리소 : 주의 1건
 - 창경궁관리소 : 주의 1건
 - 칠백의총관리소 : 주의 1건

- 재정상 조치 : 환수 5건 10,151,740원
 - 창덕궁관리소 : 환수 2건 3,661,740원
 - 창경궁관리소 : 환수 2건 5,960,000원
 - 칠백의총관리소 : 환수 1건 530,000원

III. 총 평

- 반복적으로 공사 설계서와 다르게 시공하거나, 사업비 정산(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)항목 등을 정산조건으로 계약을 하지 않아 사업비를 과다 지출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
- 일부 기관에서는 회화류 등 유물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으며, 유물취급규정에 의한 유물관리대장 및 유물분류 목록 작성이 되어있지 않아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
- 문화재보호기금 예산은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당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집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목적상 일반회계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 사업에 대하여 기금회계 예산으로 집행함
- 입찰참가자격 제한사항, 적격심사 등 입찰공고에 관한 일반적인 업무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사례가 있음
- 금번 감사 대상 3개 기관 중 창덕궁관리소 등 2개 기관에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세출예산 집행 지침에 따라 예산과목에 합당한 지출을 하여야 함에도 직원회식 등의 명목으로 일반수용비와 시설부대비를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집행하여 공직 윤리 의식제고 노력이 필요
- 관행적인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근절을 위해 각 부서에 감사 사례 전파 및 향후 동일 사례 적발 시 엄중 조치 검토

IV. 조치계획

-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통보
- 해당 관련부서에 통보 조치

첨부 :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1부.

□ 창덕궁관리소 6건 : 주의 1건, 기관주의 1건, 시정 3건 (환수 2), 모범 1건

지 적 내 용	처 분 요 구	비 고
<p>① 보수공사 설계용역비 산정 부적정</p> <p>○ ‘창덕궁 내부 노후담장 보수정비공사’ 용역비 (2011.4.28 / 34,365천원)를 산정(직선보간법)하면서 산출수식에 추정가격(727,272,727원 / 부가가치세 제외금액)을 반영하여야 하나, 총공사금액(800,000천원)을 적용하여 2,587,200원을 과다하게 책정하여 발주하였고,</p> <p>- 서울지방조달청(기술심사팀 〇〇〇)에서 동 공사는 「건축사법사업대가기준」이 아닌 「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」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별도의 검토과정 없이 이를 인정하였고 서울 지방조달청에서는 「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」으로 잘못 적용하여 39,795,000으로 입찰공고를 하였음.</p> <p>- 이는 결과적으로 5,475,000원을 과다하게 발주하게 됨으로써 낙찰율(88.843%) 기준 3,874,083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음.</p>	<p>○ 향후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설계 용역비 대가 산정은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(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-859 / 2009.9.2)에 근거하여 동 예규 [별표2]의 공사 추정가격 금액에 따라 당해 요율을 적용하여 용역비를 산정하시기 바람</p> <p>* 관련자 : 시설주사보 〇〇〇</p>	<p>주 의</p>
<p>② 세출예산 목적 외 사용에 관한 사항</p> <p>○ 창덕궁관리소는 2010~2011회계연도에 편성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세출 예산집행 지침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일반수용비(210-01목)로 편성된 예산을 전용 등 필요한 조치 없이 총 16,758,150원을 업무추진비(240목) 성격으로 부당하게 집행함</p> <p>- 2010년도 : 34건 11,624,150원, - 2011년도 : 19건 5,134,000원</p>	<p>○ 향후 예산 집행시에는 회계규정과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, 2011.9월 이후 부당집행한 5건(1,345천원)에 대하여는 환수 조치하시기 바람</p> <p>(환수금액 : 금 1,345천원)</p>	<p>기관 주의 (환수)</p>
<p>③ 입찰·계약체결에 관한 사항</p> <p>○ 창덕궁관리소는 ‘소방살수차 관리장비 보관차고 신축공사’(2010.5.13 / 48,388천원)를 제한경쟁입찰로 시행하면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(제한경쟁 입찰의 제한기준)에 근거하여 지역제한을 공사현장</p>	<p>○ 향후 입찰계약 업무 추진 시 국가 계약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람</p>	<p>시 정</p>

지 적 내 용	처 분 요 구	비 고
<p>이 있는 서울특별시(창덕궁)로 한정하여 제한하여 함에도 경기도, 인천광역시를 포함하여 지역을 제한하였고,</p> <p>○ ‘주차장 화장실 전기공사’를(2011.8.30 / 19,200 천원) (주)○○엔지니어링과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면서 공사발주(2011.8.24)와 계약(2011.8.30) 체결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착수 (2011. 8.16)하여 국가계약법을 위반함</p>		
<p>④ 유물관리 및 보존처리에 관한 사항</p> <p>○ 창덕궁관리소는 현재 회화류 7점, 현판류 250점, 가구류 40점, 기타 52점 등 총 349점의 유물을 보관하고 있으며, 문화재청 훈령 제228호 유물취급규정에 의거하여 유물관리대장 및 유물분류목록 작성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규정에 맞지 않는 양식으로 관리하고 있어 실제 소장하고 있는 유물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보존 가치가 뛰어난 유물에 대한 관리가 매우 미흡한 바 유물관리에 철저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</p> <p>○ 문화재청은 2009년부터 연차로 ‘살아 숨 쉬는 4대궁과 중요만들기’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맞추어 양질의 유물을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하는데 2012.2월 현재 창덕궁 대조전 및 회정당에 소장되어 있는 회화류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는 실정으로 전문 인력의 보존처리작업을 거친 후 공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, 훼손 유물에 대한 적절한 보존 조치 없이 공개가 이루어질 경우에 또다른 민원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고 사료됨</p>	<p>○ 유물관리대장 및 유물분류 목록을 유물취급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현행화하여 주시고 훼손된 회화류는 보존처리 후 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수처리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</p>	<p>시 정 (공능 문화재과 통보)</p>

지 적 내 용	처 분 요 구	비 고												
<p>⑤ 존덕정 해체보수 적심재 정산 관련</p> <p>○ 창덕궁관리소는 ‘존덕정 해체보수’ (‘10.5.18~’ 10.9.29/220,651,000원)의 지붕공사 중 적심목 설치는 당초에 구부재를 40% 재사용하고, 신재를 60%(1883.95재, 2,164,658원) 사용토록 설계되어 있었으나, 실제 공사에 있어서는 해체부재 중 기존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구부재를 적심재로 90% 사용하고, 신재를 10%만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,</p> <p>○ 정산과정에서 적심재 구부재 사용량(50%)을 삭감 하지 않고 당초 설계된 신재 60%를 사용한 것으로 정산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음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단위: 원)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156 1032 825 1272"> <thead> <tr> <th>분</th> <th>당 초</th> <th>조 정</th> <th>비 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적심재 사용 물량</td> <td>1,883.95재 (신재 60%)</td> <td>313.9재 (신재 10%)</td> <td>감 1,570.05재</td> </tr> <tr> <td>원가계산금액 (전체공사비 기준)</td> <td>220,651,000</td> <td>218,334,260</td> <td>감 2,316,74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분	당 초	조 정	비 고	적심재 사용 물량	1,883.95재 (신재 60%)	313.9재 (신재 10%)	감 1,570.05재	원가계산금액 (전체공사비 기준)	220,651,000	218,334,260	감 2,316,740	<p>○ 시공물량 축소에 따른 재료비 미시공분을 환수토록 하고 향후 부터는 감독 및 검사업무에 안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</p> <p>(환수금액 : 금 231만 6,740원)</p>	<p>시 정 (환 수)</p>
분	당 초	조 정	비 고											
적심재 사용 물량	1,883.95재 (신재 60%)	313.9재 (신재 10%)	감 1,570.05재											
원가계산금액 (전체공사비 기준)	220,651,000	218,334,260	감 2,316,740											
<p>⑥ 자연재해 피해목을 활용한 편의시설 제작 및 설치</p> <p>[사업내용]</p> <p>○ 2010년 9월 제7호 태풍 곤파스, 2011년 여름 집중호우로 쓰러진 느티나무 등 5종 총 25주를 폐처리하지 않고 별도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관람객 편의시설로 활용할 의자 66개를 제작 하여 활용하고 있음</p> <p>[효 과]</p> <p>○ 자연경관에 어울리는 관람 편의시설을 비치하여 궁궐 내 관람편의시설 부족 일부 해소</p> <p>○ 예산절감액 : 26,800천원 (자체인력 활용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인용 의자 : 19개*50,000원=950,000원 - 3~4인용 장의자 : 47개*550,000원=25,850,000원 	<p>○ 2012년 연말 자체감사 우수사례 심사 대상에 포함</p>	<p>모 범</p>												

지 적 내 용	처 분 요 구	비 고
---------	---------	-----

□ **창경궁관리소 5건 : 주의 1건, 기관주의 1건, 시정 2건 (환수2), 모범 1건**

지적내용	처분요구	비고
<p>① 공사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</p> <p>○ 창경궁관리소는 ‘홍화문 보수공사’(2009.4.16 / 206,352천원)를 ○○종합건설(주) (대표 ○○○)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가계산서에 ‘수리보고서’ 비용(8,464,730원)과 ‘단청특성조사용역’ 비용(13,240,920원) 등 총 21,705천원을 계상하였으나, 이는 과업내용에 대한 원가계산이 불확실함으로 사후원가검토(P.S)를 조건으로 한 잠정금액으로 책정하고 계약이행 완료 후 정산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,</p> <p>- 확정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정산을 하지 못하고 계약금액(21,705,650원)을 그대로 인정하여 8,020,650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음</p> <p>* 정산금액 : 13,685,000원 (2012.3.7 업체 제출)</p>	<p>○ 향후 입찰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 조건(P.S)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정산하시기 바람</p> <p>* 관련자 : 시설주사 ○○○</p>	주 의
<p>② 세출예산 목적외 사용 등 회계업무 처리 부적정</p> <p>○ ① 「국가재정법」 제45조(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) 및 「예산 및 기금 운영계획집행지침」에 의거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</p> <p>- 창경궁관리소는 2010~2011회계연도에 편성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세출 예산집행 지침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일반수용비(210-01목), 특근매식비(210-05목), 시설부대비(420-05목)로 편성된 예산을 전용 등 필요한 조치 없이 총 7건 5,206,220원을 (2009년도 : 3건 2,971,220원, 2010년도 : 3건 1,835,000원, 2011년도 1건 400,000원) 업무추진비(240목) 성격으로 부당하게 집행함</p>	<p>○ 향후 예산집행시에는 회계규정과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며, 2011. 9월 이후 부당집행한 1건(400천원)은 환수 조치하시기 바람</p> <p>(환수금액 : 금 400천원)</p>	기 관 주 의 (환수)
<p>③ 퇴직소득 및 기타소득 세금 미부과</p>		시 정

지적내용	처분요구	비 고
<p>○ 「소득세법」 제14조(과세표준의 계산), 동법 제21조(기타소득) 및 22조(퇴직소득)의 규정에 근거한 퇴직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해야하나, 강사수당 6회 등 기타소득 313,870원(소득세 285,340원, 주민세 28,530원 / 2010년), 비정규직 3명의 퇴직소득 241,110원(소득세 219,210원, 주민세 21,900원 / 2010년) 등 총 554,980원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소득수령자에게 전액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</p>	<p>○ 향후 급여업무 담당자는 퇴직소득, 기타소득 등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</p>	
<p>④ 환경전 보수공사 관련</p> <p>○ 창경궁관리소는 2010.6.1~2010.12.15까지 환경전 보수공사(○○건설(주) / 534,568,000원)를 시행하였음.</p> <p>○ 상기 공사에 대한 내역 검토 결과, 설계서(산출서및 내역서)에는 지붕하중을 경감시키고자 설계변경을 거쳐 적심재 물량을 늘이고(4,487.13재→10,465.86재) 보토 후 강회다짐으로 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, 실제 시공에 있어서는 보토 공정은 생략(49.85㎡ → 0㎡)하고 강회다짐을 시공한 사실이 있음</p> <p>○ 미시공된 보토공정 물량(5,560,000원)을 설계 변경 감액하여야 하나 이를 인식하지 못하여 감액 조정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</p>	<p>○ 시공물량 생략에 따라 과다 지급된 금액을 환수토록 하고 향후부터는 감독 및 검사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</p> <p>(환수금액 : 금 556만원)</p>	<p>시 정 (환 수)</p>
<p>⑤ 야간개방으로 대국민 문화 향유권 증진 및 경관 조명 개선사업 실시</p> <p>[사업내용]</p> <p>○ 2011년 ‘살아숨쉬는 4대궁·종묘 만들기’ 사업 관련 상· 하반기 야간개방 실시</p> <p>- 개청 50주년을 기념하고 창경궁 복원공사가 이뤄지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진 ‘밤 벚꽃놀이’의 의미와 추억을 되새기며 도심 내 휴식공간과</p>	<p>○ 2012년 자체감사 우수사례 심사 대상에 포함</p>	<p>모 범</p>

지적내용	처분요구	비 고
<p>문화향수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증가되는 사회적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창경궁 야간개방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,</p> <p>○ 경내 야간 조명시설이 전무한 상태에서 경복궁의 청사초롱 등 조명시설을 대여(행사 후 반납)하여 자체 인력으로 설치하고 관람객 안전을 위해 전직원이 야간까지 근무하는 등 철저한 준비로 야간개방을 실시하였음</p> <p>[효 과]</p> <p>○ 그 결과 창경궁 야간 경관조명 개선사업을 실시하여 관람환경을 개선</p> <p>※ 야간 개방에 따른 관람객이 증가</p> <p>- 상반기 야간 관람인원 수 (4.26~5.1) : 6,211명</p> <p>- 하반기 야간 관람인원 수 (10.3~10.9) : 6,787명</p> <p>○ 예산절감액 (자체인력 활용) : 10,394,000원</p> <p>- 사업 소요예산 : 15,000,000원</p> <p>- 자체인력 활용 : 10,394,000원</p> <p>- 외부인력 활용 : 4,606,000원</p>		

□ 칠백의총관리소 5건 : 주의 1건, 시정 4건 (환수 1)

지 적 내 용	처 분 요 구	비 고												
<p>① 순의비각 개축공사 관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칠백의총관리소는 '09.4.21~' 09.9.11까지 순의비각 개축공사(○○건설(주) / 85,392,000원)를 시행하였음 ○ 상기 공사에 대한 설계 내역을 검토한 결과, 기단공사에서 테두리는 화강석기단으로, 기단바닥은 방전팔기로 시공토록 되어 있어, 석재 가공품은 화강석 테두리면만 가공(도두락 25눈)품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하나, 수량 산출서에는 기단 테두리 및 기단 바닥을 석재(화강석) 가공토록 품이 적용되어 있어 과다하게 공사비가 책정 되었고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161 909 823 1093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분</th> <th>당 초</th> <th>조 정</th> <th>비 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화강석 기단 가공물량</td> <td>34.31㎡</td> <td>11.63㎡</td> <td>감 22.68㎡</td> </tr> <tr> <td>원가계산금액 (전체공사비 기준)</td> <td>85,392천원</td> <td>82,414천원</td> <td>감 2,978천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설계검토 및 공사 과정에서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 변경 감액하여야 하나, 이를 인식하지 못하여 감액조정하지 않아 2,978천원을 과다하게 지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	분	당 초	조 정	비 고	화강석 기단 가공물량	34.31㎡	11.63㎡	감 22.68㎡	원가계산금액 (전체공사비 기준)	85,392천원	82,414천원	감 2,978천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향후에는 설계검토 및 공사 과정에서 설계도서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람. * 관련자 : 임업주사보 ○○○ 기능8급(건축원) ○○○ 	주 의
분	당 초	조 정	비 고											
화강석 기단 가공물량	34.31㎡	11.63㎡	감 22.68㎡											
원가계산금액 (전체공사비 기준)	85,392천원	82,414천원	감 2,978천원											
<p>② 공사 입찰에 관한 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경외화장실 정화조 교체공사'(입찰일 2009.3.31 / 발주금액 25,919천원)를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시행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면서 입찰공고문에는 「재정경제부 회계예규 적격심사 기준」에 따라 공사수행 적격자를 평가한 후 계약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공고하였으나, 실제로는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고 견적입찰 방식의 견적가격만으로 낙찰자를 선정하였으며, ○ '건설공사 폐기물'(4,673천원)이 141톤으로 분리발주 기준 100톤을 초과하였음에도 별도로 분리발주하지 않고 건설공사에 포함하여 계약을 시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건설공사 계약업체(○○건설)에서는 하도급 방식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각종 계약체결 시 「국가계약법 「적격심사 기준」(재정경제부 회계예규)등을 준수하여 입찰를 시행하여 주시고 ○ 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의거 건설폐기물이 100톤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시기 바람 	시 정												

지 적 내 용	처 분 요 구	비 고
으로 공사를 수행하게 되었음		
<p>③ 퇴직소득 및 기타소득 세금 미부과</p> <p>○ 「소득세법」 제14조(과세표준의 계산), 동법 제21조(기타소득) 및 22조(퇴직소득)의 규정에 근거한 퇴직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 징수해야 하나, 강사료 등 기타소득 246,400원(소득세 224,000원, 주민세 22,400원 / 2009~10년), 비정규직 20명의 퇴직소득 424,530원(소득세 386,030원, 주민세 38,500원 / 2009~12.3월) 등 총 670,930원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소득수령자에게 전액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</p>	<p>○ 향후 급여업무 담당자는 퇴직소득, 기타소득 등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</p>	<p>시 정</p>
<p>④ 「공능 방재시스템 구축」 기금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</p> <p>○ 문화재보호기금 회계의 「공능방재시스템 구축」 예산을 방재시스템 구축에 따른 야간경비 인력 임금, 야간방호 활동에 따른 제복비, 특근매식비 등 방재 예방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제한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</p> <p>○ 2011년도 「공능방재시스템 구축」 기금 예산을 집행하면서, 연말 예산 불용 등을 우려하여 사업목적상 일반회계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 ‘칠백의총 안내 리플릿 국어 번역비’ 등 4건 (9,110,600원)을 기금회계인 「공능 방재시스템 구축」 예산으로 집행함</p>	<p>○향후에는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예산의 목적 외로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람</p>	<p>시 정 (정책총괄과 통보)</p>
<p>⑤ 문화재 현장체험 배낭여행 여비 지급 부적정</p> <p>○ 칠백의총관리소는 2개조로 나누어 (A조 ‘10.10.13 ~ 10.15, B조 ’ 10.10.19 ~ ‘10.21) 총 18명이 문화재 현장체험 배낭여행을 실시하였음</p> <p>○ 상기 여행 과정에서 이동 수단을 차량 임차(○○렌트카 / 780,000원)로 추진하였으므로, 여비 정산 시 “공무원 여비 규정” 에 따라 일비의 2분의1을 감액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액하지 아니하고 전액을 지급함</p>	<p>○ 과다 지급된 여비는 환수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“공무원 여비 규정”에 따라 여비 정산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람 (환수금액 53만원)</p>	<p>시 정 (환 수)</p>

지 적 내 용						처 분 요 구	비 고
	일자	인원		일비,	과지급액 (일비 50%)		
A조	10.13~15	7명	420천원	420천원	210천원		
B조	10.19~21	11명	640천원	640천원	320천원		
계		18명	1,060천원	1,060천원	530천원		